

의견서

사 건 2014누 63000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등 처분 취소
원 고 (피 항소인) 주식회사 디에스종합건설
피 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위 사건에 대한 판결이 2015.5.14. 선고 되었는바, 위 판결에 대한 의견을
보냅니다

1. 판결주문의 요지

가. 입찰보증금 귀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
음.

2. 판결이유의 요지

가. 입찰보증금 귀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가 입찰보증금 부
과 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사법상 계약에 관한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제재기간이 종료되었으
므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은

공정인이 법무법인 우인

(우 100-845)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9길 39. 8층
TEL : (02)3775-3960, 2711 / FAX : (02)3775-3962, 2714
E-mail : wooinlaw@hanmail.net

원고에 대하여 장래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제재처분의 전제조건이나, 가중요건으로 고려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즉 장래에 불이익을 받을 현실적 위험이 존재하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서 정한 설계 변경절차를 거쳐 설계내역서와 시방서 간 모순의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낙찰자가 계약체결에 설계서 등의 중대한 하자나 모순점을 발견할 경우에도 위 근거규정을 믿고 일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데에 어떤 귀책사유가 없다고 피고의 항소이유를 배척 하였습니다.

3. 판결에 대한 의견 (상고 제기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제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느냐는 여부였는 바, 판결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하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일응 위 판결이 정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한편 실체관계에 들어가 원고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 따라서 상고포기 의견을 보냅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 인

(우 100-845)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9길 39. 8층
TEL : (02)3775-3960, 2711 / FAX : (02)3775-3962, 2714
E-mail : wooinlaw@hanmail.net

2015. 5.18.

피고소송대리인

범무법인 우인

담당변호사 정 주 식



서대문 구청장 귀중



공증인가 범무법인 우인

(우 100-845)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9길 39. 8층
TEL : (02)3775-3960, 2711 / FAX : (02)3775-3962, 2714
E-mail : wooinlaw@hanmail.net